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6
----------	-----

2016.09.09.(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인수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8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8월 29일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및 예산지원 규정 (안 제4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개척과 판로지원(안 제5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안 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안 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 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내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동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에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설비 구축 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른다.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⑤ 시·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시·도계획“은 “시·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사업지원)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3.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4.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

6.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제5조(판로지원) 및 제6조(공동사업지원) 근거에 따른 필요한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도내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1개소
- 다. 추계 결과 : 2016년 ~ 2020년까지 총 4,000백만원 정도 소요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도비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
세 출	4,000	800	800	800	800	800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4,000	800	800	800	800	800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220-3510)